

긴급!!

# 건설근로자

# 수해복구 지원금을

# 신청하세요!!



## 지원내용 및 인원

- 수해피해자 100명에게 현금 100만원 무상지원

## 신청자격

-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이고, 2019년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피공제자 중 올해 수해로 인해 **본인의 실거주 주택**에 피해를 입은 건설근로자

## 제출서류

- 수해복구 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각 1부.
-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'피해사실확인서' 1부.
- 주민등록등본(본인 명의),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,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중 1부.

※ 주민등록등본(본인 명의) 상 거주지와 피해 사실확인서의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신청 불가(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)

※ 신청일부터 한달 내에 발급분에 한해 유효

※ 예산 소진시까지 서류가 완비되지 않을 경우 지원 불가할 수 있음

## 신청기간

- '20. 8. 31.(월) ~ 예산 소진시까지

## 신청방법

- 공제회 지사·센터 방문,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(PC, 모바일) 우편, 팩스 등

## 지급방법

-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

## 문의

- 고객센터(1666-1122)

■ 재난재해대책법 시행규칙 (별지 제16호서식) <개정 2012.8.23>

### 피해사실확인서

발급번호: 제 호

피해자	주소			
	성명	생년월일		

피해 내용

대상	단위	피해 규모	피해물의 소재지	피해 일시	제해의 종류

용도

제출처

위 사람이 소유(경작)하고 있던 재산에 위와 같이 피해가 있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인: 성 명 (인)  
생년월일  
주소

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  
음·면장

위 사실을 확인함.

년 월 일

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 직인

※ 이 확인서는 발급일부 3개월간 유효합니다.

210mm×297mm(복합지 80g/m<sup>2</sup>)

